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혼한 배우자에 대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98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16.
3. 회부연월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

텃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재혼하는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생략) 2. <u>재혼</u> 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u>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혼인기간은 시행일 이전에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퇴직급여, 퇴직한 공무원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거나 사망할 때 지급되는 퇴직수당으로 구분됨.¹⁾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해당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애급여

가. 비공무상 장애연금

나.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4. 퇴직수당

2) 「공무원연금법」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①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최근 10년간 재혼으로 인한 퇴직유족연금 종결 현황 》

연 도	연금수급자수	증 감	신 규(A)	감 소(B)		
				종결	재혼	계
2015	48,867	3,547	4,088	534	7	541
2016	52,410	3,543	4,195	651	1	652
2017	56,216	3,806	4,680	870	4	874
2018	60,266	4,050	4,960	906	4	910
2019	64,685	4,419	5,407	978	10	988
2020	68,992	4,307	5,297	981	9	990
2021	73,461	4,469	5,925	1,452	4	1,456
2022	78,498	5,037	6,955	1,914	4	1,918
2023	82,910	4,412	6,935	2,516	7	2,523
2024	87,824	4,914	6,891	1,970	7	1,977
최근 5년 평균 재혼 종결자 수						6.2명
최근 10년 평균 재혼 종결자 수						5.7명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서,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분할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나 새로운 배우자로부터의 부양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공무원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그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퇴직유족연금은 사망한 공무원에게 부양받던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급여라는 점에서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배우자는 사망으로 부양이 단절된 다른 유족에 비해 공무원연금을 통한 공적 부양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배우자(혼인 기간 5년 이상)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부모 등 후순위 유족에 대한 부양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퇴직유족연금은 분할연금과는 달리 유족 간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이 강하고, 분할연금과 취지 및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유족급여와 분할연금 비교》

구분	유족급여	분할연금
성격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재산권적 성격
수급 요건	공무원 사망 당시 혼인 상태	재직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혼인
수급 개시	공무원 사망 즉시 수급	공무원과 이별 배우자 모두 65세
급여 이전	후순위 유족 등에게 이전	수급권 이전 없음
급여 수준	퇴직연금의 60%, 동순위간 균분	최대 1/2 범위에서 혼인기간 비례

자료: 인사혁신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2019헌가31)을 내린 바 있고, 현재 주요 공적연금³⁾에서 유족인 배우자에 대해 재혼 시 그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유족급여는 사망 공무원에게 부양되던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파생적 급여로서 재혼한 배우자는 그 필요성이 낮다는 점, 재혼한 배우자의 수급권을 인정할 경우 후순위 유족의 부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주요 공적연금 모두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 간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학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은 생계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로서 재산분할 성격의 분할연금과 다르고, 재혼 시 수급권 상실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출하였음.

3) (민간) 국민연금, 산재보험 / (공공) 공무원연금·재해보상, 군인연금·재해보상,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관련 헌재 결정례 (2019헌가31)》

【 판시사항 】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 결정요지 】

부부는 민법상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를 갑작스러운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배우자가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족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러한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의 유족이라는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공무원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인 유족의 생계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실상 재혼관계는 법률상 재혼관계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로서 항상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의 지속에 대한 기대도 약하다.

배우자가 재혼 후 이혼 또는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과 같이 재혼이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이 부활되도록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시키고 있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을 침해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였다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에 있으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군인연금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합헌 5 : 위헌 4 의견(2021헌가28)

문 의 처
02)6788-5342